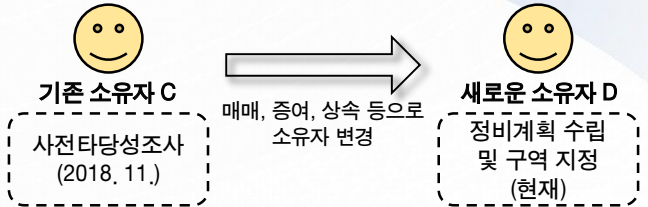


아현동 699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안내

● 주민의견수렴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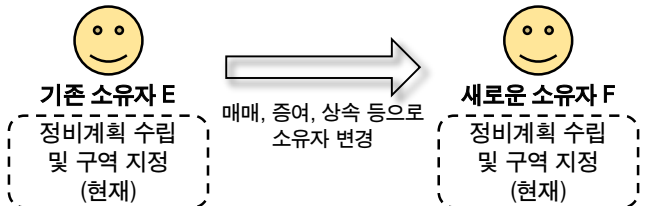
- ▶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』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/3이상, 토지면적 1/2 이상 주민동의를 충족하여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.
- ▶ 2018년에 실시한 '사전타당성조사' 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 시에도 유지됩니다.
- ▶ 그러나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서를 새로이 제출해 주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기 제출한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
 -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 - 무효표 처리된 경우

●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


**소유자 D의 의견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
(심의 전까지)**

● 추후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



**소유자 F의 의견을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
(심의 전까지)**

● 기 제출 의견에 대해 변경 의사가 있는 경우

소유자 A

저는 사전타당성조사 때 찬성했는데 반대하고 싶어졌어요.

소유자 B

저는 사전타당성조사 때 반대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!

▶ 소유자 A의 경우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	정비사업 추진 동의	정비사업 추진 반대
토 지 등 소 유 자 의	()	(☒)

※ 표시 방법: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경우 '정비사업 추진 동의' 에,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'정비사업 추진 반대' 에 "O" 표시하십시오.

주민의견서 中 **"정비사업 추진 반대"** 에 체크 후 의견을 새로이 제출

▶ 소유자 B의 경우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	정비사업 추진 동의	정비사업 추진 반대
토 지 등 소 유 자 의	(☒)	()

※ 표시 방법: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경우 '정비사업 추진 동의' 에,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'정비사업 추진 반대' 에 "O" 표시하십시오.

주민의견서 中 **"정비사업 추진 동의"** 에 체크 후 의견을 새로이 제출

● 무효표 처리된 경우

- ▶ “주민의견서 제출 내용 무효” 관련 안내문을 받으신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새로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대표소유자를 선임할 경우

- 1) 모든 공유자들이 대표자 선임동의서에 동의
(1명이라도 동의 안 할 시 무효)
- 2) 자필서명 및 장날인 필수
(기타 인감 도장 등 인정 불가)
- 3) 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첨부

-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지 않고, 각각 의견을 제출할 경우

- 1) 모든 공유자들이 같은 의견으로 제출되어야 유효

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?

- ▶ **마포구청 주택과 (02 - 3153 - 9312~5)**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